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4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김정재・김기현・김도읍

박충권 • 이헌승 • 이달희

서일준 • 박성민 • 김소희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·조정되고 있고,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,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.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

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(안 제52조의10제4

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2조의10제2항 중 "분쟁조정위원회"를 "분쟁조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하자심사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결과를 송달·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의 절차와 첨부서류 등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3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당사자로부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3조제4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의10(하자 등의 감정) ①	제52조의10(하자 등의 감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	②
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	
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9조	
에 따른 하자심사· <u>분쟁조정위</u>	<u>분쟁조정위</u>
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	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하자심
있다.	<u>사위원회"라 한다)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하자
	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
	가 있는 당사자는 그 결과를
	송달·통보받은 날부터 30일
	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
	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의
	절차와 첨부서류 등은 「공동
	주택관리법」 제43조제4항에
	<u>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<u> <신 설></u>	⑤ 당사자로부터 제4항에 따라
	이의를 접수한 조정위원회는
	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
	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

여야 한다. 조정위원회가 당사 자로부터 이의를 접수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 43조제4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.